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76호 / 주간 16호

2026. 4. 22.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③ 즉답(010-2672-2250)
- ④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⑤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⑥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⑦ CEO·CFO 경영에세이
- ⑧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⑨ 세무·회계·재경고문
- ⑩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의 주임종 가지급금 · 대여금의 정상화 방법들	표지
CEO의 경영산책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에 최근 동향 (1)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 고민할까?)	- 제세공과금 및 유틸리티 비용 거래 - 포괄양도양수시 양도자 계속사업 - 온라인 이벤트 당첨자(사진등을 올리는 경우) 및 미선수행한 홍보대 사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 - 원자재 인상 분 소급 적용 일괄 회수 처리시 부가세 문의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으로 종결 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택 취득 원인 및 보유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 비교 - 퇴직금 제도 비교	8 9
직장인Survival	‘일 잘한다’는 평가의 기준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35, 2024.11.14) - 상증법§48⑩(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서면법규법인-3988, 2025.04.23)	11 12
세정뉴스와해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13
마케팅 Tax consulting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수표로 수취한 경우 해당 수표 수취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함	12
세무정보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14 25 4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48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에 최근 동향 (1)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2025년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부통제 의무는 직접적인 신규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충실의무 확대와 연계되어 이사의 감시·운영 의무 실효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최근의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상법상의 법리와 판례 동향을 기업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 내부통제 관련 상법 규정

상법에는 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신 선관주의 의무(제382조의2), 충실의무(제382조의3), 감시의무(제399조 제1항)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해석하고 있다.

• 제382조의2 (선관주의 의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 제382조의3 (충실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025년 개정)

• 제399조 제1항 (감시의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례를 통한 내부통제 의무 인정

상기 조문들은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를 '임무 게을림' 또는 '주의 기울이지 않음'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대법원 판례(2022다279347 등)에서 제399조 제1항을 통해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미비를 감시의무 위반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의 법리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는 선관주의의 의무의 일부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며, 대표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포함된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회사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지나, 대규모 회사라도 사무분장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법 의심 사유 시 적극 대응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다222368 판결(2021.11.11 선고)의 판례

대법원은 유니온 스틸의 장기적 가격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손해를 이유로 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대표이사의 직접 관여를 부정하나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략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제세공과금 및 유틸리티 비용 거래

Q 저희가 자산을 양도하면서 상대 거래처와 세금 및 유틸리티(전기세 등) 를 일할 계산하여, 상대 거래처에 입금하고 상대거래처가 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보통 세금이나 유틸리티 고지의 경우 납부할 때 부가세는 없지만, 이런 경우 상대 거래처와의 거래이므로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수수는 재화나 용역거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포괄양도양수시 양도자 계속사업

Q 약국을 포괄양도양수 하려고합니다.

양수약국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고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는데 양도약국의 은행대출이 남아있어 사업자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자 유지해도 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부채(대출)도 승계되어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승계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도 유지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자산양수도로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온라인 이벤트 당첨자(사진등을 올리는 경우) 및 미션수행한 홍보대사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

- Q**
1.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하는 온라인 이벤트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홍보대사 중에서 매달 그 달의 미션을 잘 수행한 우수자에게 상품권 등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의 두 경우 일반인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나 미션 수행 결과등의 원작자로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창작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A**
1.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으므로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홍보대사 중 매월 미션수행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3. 공모를 통한 사진에 대한 심사 및 평가하여 입상자에게 상금 및 경품지급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창작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이나 사진을 올리는 대상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을 통한 경품지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자재 인상 분 소급 적용 일괄 회수 처리시 부가세 문의

- Q**
- 최근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당사 해외 판매처에 판매단가를 현실화 하여 보상기로 협의를 하고 작년 단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PO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인보이스도에 발행이 되어 수금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때 당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런지 여부입니다.

- A**
- 수출금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증감사유가 확정되어 인보이스가 발급된 시점이 속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종결 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 소득자 외에도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포함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고용의 불안전성과 소득금액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즉, 일반근로자와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의 구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열거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로서 매시간, 매일별 근무 조건에 따라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동일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로 본다.

건설공사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은 일반 정규근로자와는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지급시 일급여액에서 1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일용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여기에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 (일급여액 - 150,000원) × 6%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급여액이 20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① 산출세액 = $(200,000\text{원} - 150,000\text{원}) \times 6\% = 3,000\text{원}$

② 원천징수세액 = $3,000\text{원} - (3,000\text{원} \times 55\%) = 1,350\text{원}$

상기의 사례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200,000원의 일용소득금액에서 150,000원의 비과세 금액(소득공제)을 공제한 50,000원에 대해 $2.7\% (= 6\% \times 45\%)$ 를 적용하면 1,350원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루당 15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2.7%의 세율을 곱하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유권해석(법인46013 - 343,97.2.1)에 따라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일 지급시점의 지급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월단위로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지급받는 시점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가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540원 $[(170,000\text{원} - 150,000\text{원}) \times 2.7\%]$ 이 근로소득세가 되는데, 이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당을 30일간 합산하여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 5,100,000원 $(= 170,000 \times 30\text{일})$ 이 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16,200원 $[(5,100,000 - 4,500,000) \times 2.7\%]$ 이 되고,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일당을 받더라도 매일 매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보다 세금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는 경우에는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미납세액} \times \text{미납기간} \times 3/10000)$ 의 가산세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화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주택 취득 원인 및 보유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 비교

구분	주택 수 및 조건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일반(유상) 취득	1주택	1~3%	1~3%
	2주택	1~3%	8%
	3주택	8%	12%
	4주택 이상 · 법인	12%	12%
증여(무상) 취득	일반적인 증여	3.5%	3.5%(3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3.5%	12%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종과가 제외되며, 위 세율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취득세율 기준임



배당소득 세 부담 한 · 미 비교

미국 상장주식	2000만원 이하 = 제한세율 15%만 내면 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6%~49.5%), 미국 원천징수분(15%) 공제
국내 상장주식(고배당 요건충족 분리과세 적용시)	2000만원 이하 = 14% + 지방소득세 1.4% = 15.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지방소득세 2% = 22%



퇴직금 제도 비교

구분	일반 통장으로 수령(퇴직금제도)	IRP 계좌로 수령(퇴직연금제도)
수령 시점 실수령액	약 9,600만원 (퇴직소득세 약 400만원 즉시 차감)	1억원 전액 (퇴직소득세 400만원 과세이연)
과세이연 효과	없음	세금 400만원이 내 계좌에서 계속 투자 수익을 만들어냄
연금 수령 시 세금	해당 없음(이미 납부 완료)	퇴직소득세의 50~70%만 납부 → 30~50% 절세

* 같은 퇴직금 1억원, 10년 근무 기준으로 비교



은퇴 후 평생 월급 만드는 3대 핵심 전략

IRP · 연금저축 활용	연 18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효과
ISA 만기 자금 전환	ISA 3년 유지 후 만기 자금 IRP로 이전 → 비과세 혜택 및 추가 세액공제 효과
TDF 등 포트폴리오 강화	원리금 보장형에서 TDF로 변경 → 수익률 제고 및 자동 자산배분 효과



‘일 잘한다’는 평가의 기준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왜 일 잘한다는 평가는 못 받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조직에서 말하는 ‘일 잘함’은 단순히 노력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준은 결과 중심 사고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과정이 조금 서툴러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결국 조직은 ‘얼마나 애썼는가’보다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본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맡겼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 마감이 지켜지고, 퀄리티가 일정하며, 문제가 생기면 미리 공유한다. 이 예측 가능성은 상사와 동료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일의 진행 상황을 적절한 시점에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특히 문제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제시하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은 조직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이다.

내 업무만 잘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이 일이 팀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는 태도다. 같은 일을 해도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 설정과 판단이 다르다.

결국 ‘일 잘한다’는 평가는 특별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고, 그 과정을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능력이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보이게 일하고 있는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수표로 수취한 경우
해당 수표 수취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함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35, 2024.11.14

■ 질 의

- 2020년 00월 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 2024.00.00.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표로 수취함에 따라 양도대금 수취일의 기준환율과 수표추심에 따른 현금 수령일의 기준환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어느 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수표수취일 환율적용시 281,567,500원, 현금수령일 환율적용시 273,060,000원으로 8,507,500원 차이 발생)

■ 회 신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직전의 기준시가 적용함

사전법규재산-162, 2025.04.24

■ 질 의

- 신청인(상가보유)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가지 고시되고 그 후에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상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때 양도시 기준시가를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승소 판결을 받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때, 상가의 기준시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
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서면법규법인-3988, 2025.04.23

Ⅰ 질 의

- 재단법인 AA대학교발전재단(이하 '질의법인')은 학술 연구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기업체 등 출연금 및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7.xx월부터 오너일가로부터 내국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 「갑법인 주식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오너일가)중에서 질의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는 없음
 - 질의법인의 이사 총 17명(교수 11명, 기타 6명)은 모두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출연자로서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질의

-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 방법

Ⅰ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그룹')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96, 2025.06.16

Ⅰ 질 의

- 질의인은 '20.x.x~24.x.x까지 사업장 A에서 갑과 공동*으로 서비스/법무사업을 운영하다,
 - *지분비율 질의인 50% : 갑 50%
 - 동업자 갑이 탈퇴한 뒤 '24.x.x부터 단독사업 영위
- 질의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 '26.12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계약종료일까지 유예('28.12까지 가능)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6.4.10.~4.17.)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차하면 탈세범? 해외신탁 신고 합리화 모색 ...내달 7일 국회 세미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해외신탁 의무신고는 역외 세원 양성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외신탁 자산이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3년 말 세법을 개정해 해외신탁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 신탁 범위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세법에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대상 신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로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이 무엇인지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세에 앞서 법리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상 수익권의 귀속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존속 여부, 해지·변경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신탁의 실질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신탁 제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법률과 법령, 나아가 형태도 다르기에 실제 신고 이행 시 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특히, 외국에 설정한 신탁 구조가 대한민국 신탁법 제2조의 '신탁관계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이라는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법령상 신고 기준 등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 국세청, 2026. 4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화)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
 -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하여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 4백만 원1))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간편하게 납세의무2))를 이행할 수 있다.
 - 1) ('20년 이전) 4,800만 원 → ('21년) 8,000만 원 → ('24년 이후) 1억 4백만 원
 - 2) (예) 간편한 신고절차(연1회),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은 세부담(1.5~4%) 등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

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로서,

-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를 정비(46.3%)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간이과세 배제지역 주요 정비 사례 Ⅰ

①	▶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는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길 건너 유동인구, 평균 매출규모가 비슷한 대형마트 소재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음
②	▶ ☆☆집단상가는 상권이 호황이라는 이유로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상권이 급격히 쇠퇴함
③	▶ ○○호텔은 관광객 감소, 경기 불황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입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고 있어 매출누락 가능성도 적음

-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53.8%)하였으며,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를 정비(69.5%)했다.
-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43.5%)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70.7%)했다.
-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하여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48.5%)했다.

Ⅰ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현황 Ⅰ

유 형	종 전	정비 후	정비한 배제지역 수	
				정비율
전 통 시 장	182	84	98	53.8%
집단상가·할인점	728	411	317	43.5%
호텔·백화점	266	137	129	48.5%

-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 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26.6.30.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2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 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 및 질 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 간 연계 순회 세 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 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정부에 개정건의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 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참 고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참고 1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현 황

- 지속되는 중동 정세불안 및 유가 급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지원 실시

□ 추진방안

- (예정 고지제외) 아래 세정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 6월분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아래 세정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승인

| '26.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유형 |

①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 상 자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한국무역협회·코트라 선정기업	
	(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한국무역협회·코트라 선정 수출기업	
②유가 민감 업종	아래 업종 영위 사업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운 송	육상(철도·버스·택시·화물·택배 등), 수상(내·외항 화물·여객 등), 항공 운송업
	석유화학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석유 정제품,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
③ 위기선제 대응지역		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사업자(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포항·서산·광양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 기대 효과

- 자금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사업 지속성과 고용유지를 뒷받침하여 세정 신뢰도와 함께 민생활력 제고 기대

참고 2

소상공인365 운영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제공

□ 현 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운영
 - *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월 평균 매출액, 인구수, 세대수 등
- 다만,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이외 모든 사업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과세정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공 범위 검토 필요

□ 추진 방안

-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목적, 서비스 제공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매·음식·숙박업 등 업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 적극 제공
 - * (예) 소매업 : 평균매출액(3년) 6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 평균매출액(3년) 15억원 이하

□ 기대 효과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수적인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을 통한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참고 3****플랫폼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현 황

- (플랫폼 파산) 티몬 회생('25.6.), 위메프 파산('25.11.), 인터파크 파산('25.12.) 등으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발생

☐ 추진방안

- (소득세 부담 완화) 티몬은 '25.6. 회생종결되어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가능
 - 위메프·인터파크는 '25.12.31.까지 파산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인정
- (적극행정) 회생 종결된 티몬뿐만 아니라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까지 필요경비 인정받도록 조치('26.2.)

☐ 향후 일정

- (절세혜택 안내) 법원 및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단을 수보하여 맞춤형 절세혜택을 통해 피해금액을 필요경비로 안내
- (소득세 납기연장) '26.5월 소득세 신고시 세정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기대 효과

-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재기 지원

참고 4**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개 요

- '19년부터 세금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영세·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등에 대해 상담·안내 및 교육 실시
 - 전국 79개 세무서에 배치한 상담 인력(123명)을 통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등 상담·안내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업종별 세금 실무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하여 화상·대면교육 실시

교 육 신 청	전화 신청	▶ 세금신고 지원사업 본부 (☎02-2114-5831~5834)
	인터넷 신청	▶ 네이버 카페(cafe.naver.com/taxsupportcenter)

□ 추진 방안

- 관서별 납세인원, 지역별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관서 (8개)에 상담인력 (8명)을 추가 배치* ('26.7월)

* (현행) 비수도권 세무서 29개 → (확대) 비 수도권 세무서 37개 (8개 ↑)

- 고령자, 영세사업자가 많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국세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중심으로 상담 인력 지속 확대 예정

□ 기대 효과

- 고령자 등이 많은 비수도권에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각 지대 해소 및 납세자 상담·지원 등 강화

참고 5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추진배경

-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 부족 등으로 세무조사 대응 그 자체가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추진방안

- ①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격 유예
- ② 이에 더해,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가격 인상 자제 등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년 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대 상) 행정안전부 등에서 심사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26.3.26. 기준) >

지정주체	평가항목	지정규모
행정안전부 등	①가격, ②품질 및 서비스, ③공공성 등	12,040개 업체

- (안 내)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납세자에게 유예제도 안내
- (신 청) 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



* 「착한가격업소」 지정증서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제출 필요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속한 민생회복 지원

참고 6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 현 황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환급금 등 조기 지급

□ 추진방안

- (부가가치세) 영세·수출중소기업 등이 환급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지급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26년 1기 예정신고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5.6.(수)까지 지급
-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국기법 §51),
 - 수정없이 제출한 모두채움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6.8.부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장려금은 법령상 신청기간 경과 후 4개월(심사 3개월 + 환급 30일 이내)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수급요건 심사 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7.(목) 지급 예정

□ 향후 일정

- 각 세목별 조기 지급일정에 맞춰 환급금 등 신속히 지급

참고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알림기능 개선

□ 현 황

- (발급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매년 공동·금융인증서 비용이 소요되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인증서 발급비용 및 저장 매체 관리 등의 측면에서 부담이 있음

- (발급 사실 확인) 바쁜 생업과 홈(손)택스 접속의 번거로움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불편 및 수취 누락 가능성 있음

□ 추진방안

- (인증수단 다양화) 전자세금계산서를 홈(손)택스 앱에서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다양화
 - 간편인증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자가 카카오톡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민간인증서는 발급비용 무료 및 별도 저장 없이 모든 모바일에서 인증서 이용 가능

- (발급 알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택스 '푸쉬 알림' 서비스 개발 추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 발행 건수, 발행 금액 합계액 안내

• (사 례) 거래대금 지급하고 물품 인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당일 저녁에 받기로 함
- (현재) 수차례 발급여부 직접 확인 ⇨ (개선) 거래일 다음날 푸쉬 알림으로 자동 확인

□ 향후 일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민간 간편인증서는 당월('26.4월) 도입, '푸쉬 알림'은 다음 달('26.5월)부터 제공 계획

참고 8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 추진 배경

-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지정·고시
 - 일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은 상권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방안

- (배제지역 정비)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영세사업자들도 간이과세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배제지역 조정

- 유동인구, 상권 규모와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분석하고 실태 확인 및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전면 정비

유 형	종 전	정비 후	정비한 배제지역 수	
				정비율
전 통 시 장	182	84	98	53.8%
집단상가·할인점	728	411	317	43.5%
호텔·백화점	266	137	129	48.5%

□ 향후 일정

- (고시 확정)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 (4~5월)
- (간이과세 안내)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 기대 효과

- 배제지역을 실제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참고 8-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백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예: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기, 2기 (1.1.~6.30., 7.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15~40%) × 1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납부 (환급)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세액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백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백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백만 원 미만
장·단점	[장 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 점] •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 신고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납부) [단 점]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48백만 원 미만) • 환급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불가 등

참고 8-3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주요 사례

사례 1

인근 지역 사업자 간 차별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배제지역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방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문제점)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는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 입점 사업자와 매출 규모가 비슷함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 발생

□ 정비 결과

- (확인 내용)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의 업황, 매출규모, 유동인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인근 지역이 하나의 상권으로 파악됨
- (정비 결과) ◇◇전통시장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여 0백명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례 2

소비위축에 따른 상권쇠퇴 등을 반영하여 집단상가 배제지역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수도권 소재 ☆☆집단상가는 패션 아울렛과 영화관이 접목된 복합 쇼핑공



간으로 신흥상권 핵심 입지에 위치하여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

- (문제점) 최근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체납, 상가 일괄 공매 등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

□ 정비 결과

- (확인 내용) ☆☆집단상가 소재 사업자의 업황, 유동인구, 상가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집단상가 관련 언론 기사를 수집·분석한 결과 상권 침체가 장기화된 것을 확인
- (정비 결과) 상권 침체 장기화된 집단상가를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여 0백명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사례 3 관광객 감소, 업종 불황으로 인한 지방 영세 호텔 배제지역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방 △△시에 소재한 ○○호텔은 관광산업 성장으로 상권 호황지역으로 보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
- (문제점) 최근 고물가, 관광 콘텐츠 부족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관광 관련 숙박업, 음식점 등의 업황 부진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 경제 침체 상황

□ 정비 결과

- (확인 내용) ○○호텔 소재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개인사업자 입점현황,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매출 신고내역, 호텔 방문인원 등을 실태확인하고 △△시 관광산업 관련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영업 부진 사실 확인
- (정비 결과)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여 지방 호텔 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 국세청, 2026. 4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목)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역시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라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혁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작년부터 전격 시행 중이다.
 -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실시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근본



적으로 전환하려 한다.

- 다만, 이러한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그간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는 정기 세무조사와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이제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단계별 흐름 >



-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도 대폭 발전하여 투명한 자료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하던 세무조사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을 향해 본격적으로 내딛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하여 공개하였다.
-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자주 과세되는 핵심유형을 선별하였으며, 유형별로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¹⁾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²⁾로 제공한다.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조사 제도 →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제공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

<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

세목	중점검증항목
법인세(소득세)	①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②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③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④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⑤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⑦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⑧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⑨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⑩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상세내용은 (참고3)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참고

- 이를 통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세청은 작년 시행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더불어,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 아울러,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사방식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①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 중점 검증항목

-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세무조사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정유형

- ① 개인 신변잡화, 가정용품(의료용 기구, 화장품, 의류 등) 구입
- ② 업무무관 업소(스포츠 교습기관, 오락장 등) 이용
- ③ 개인적 치료비(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병원 등) 결제
- ④ 업무와 무관한 주류·공휴일 사용, 해외 사용, 사업장 밖 원거리 사용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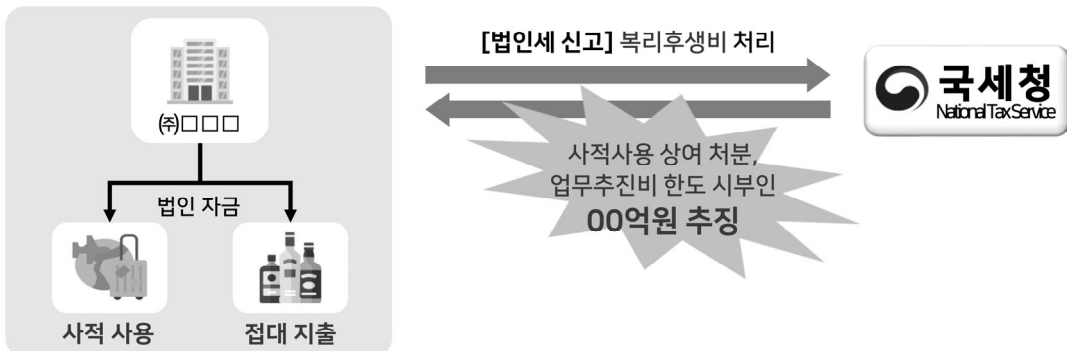
- (유의사항) 사용목적에 맞게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한하여 법인(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업무·출장자료(기안문·이메일 등),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 (상품권 지급처·지급목적 등), 해외 출장 보고서, 기타 사진 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동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동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주요 사례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



● 조사 결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00억원은 손금부인하여 상여 처분하고, 접대목적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여 법인세 등 00억원 추정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해도 되나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평일인지 휴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결제했다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휴일에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썼다면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2.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본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구 접대비)·회의비·출장비 등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참석자·장소·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부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②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 중점 검증항목

- 법인(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개인계좌로 받은 매출을 미신고하여 세무조사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정유형

- ① 대표자·친인척 및 직원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 미신고
- ② 대표자 해외계좌를 통해 받은 해외 매출대금 미신고
- ③ 온라인 플랫폼 매출을 개인계좌로 정산 후 미신고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 (유의사항) 매출대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하며,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거래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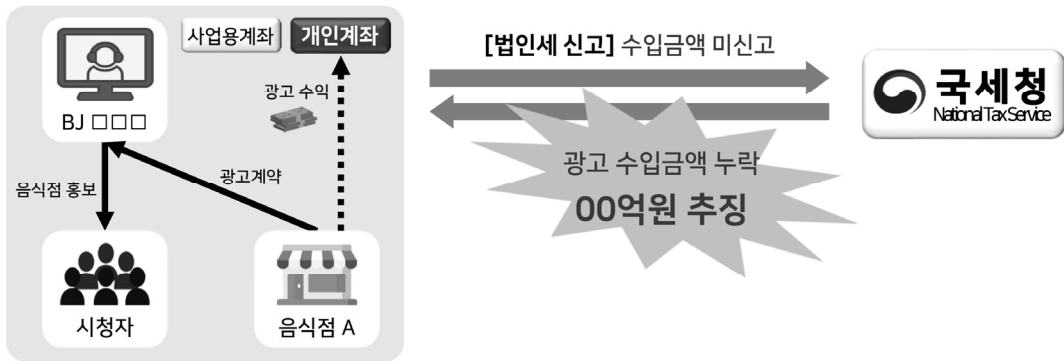
- (준비서류)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견적서·발주서, 거래처 이메일 등), 정상 신고 입증 자료(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사업용 계좌 이체내역 등), 기타 개인계좌 사용 경위 소명자료 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동법 제67조 (소득처분)

● 주요 사례

유명 BJ가 온라인 방송에서 특정 업체를 홍보하고, 그 광고수익을 개인계좌로 받아 매출 누락



● 조사 결과

- 해당 광고의 과거 방송일자, 이메일 송수신 내용, 통장 거래명세 등을 대사하여, BJ가 누락한 광고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억원 추징

●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계좌로 매출 대금을 받으면 무조건 매출 누락인가요?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것 자체가 매출 누락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나 세금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Q2.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수입금액 및 경비와 관련된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비는 그 거래의 사업 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③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임의포기

○ 법인(개인)사업자가 받아야 할 돈(매출채권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포기하여 세무조사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정유형
 - ① 관계유지를 위해 회수가 가능한 거래처 매출채권 포기
 -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임의포기
 - ③ 확정된 판매금액을 사전 약정·규정없이 할인해 주는 경우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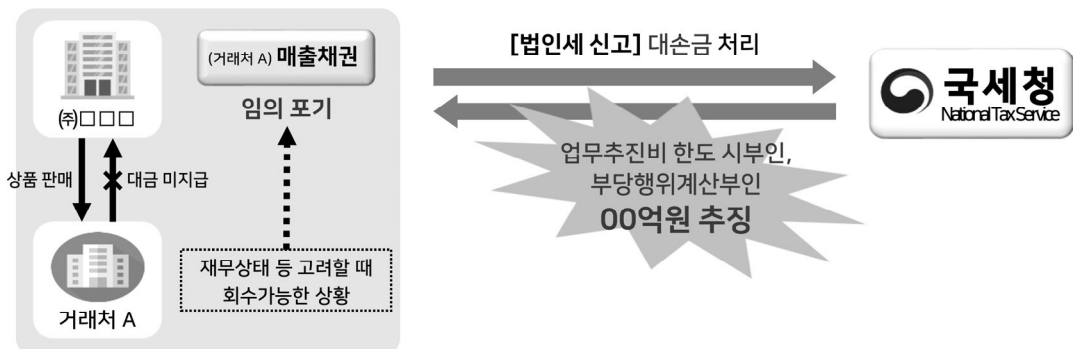
- (유의사항) 매출채권의 포기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포기한 채권이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회수불능 입증자료(채무자 파산·회생·폐업등), 특수관계인 채권의 경우 정상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타 관련 자료(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내부 결재 문서) 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동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 주요 사례

매출채권 등을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계상



● 조사 결과

거래처의 재무상태·영업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 가능함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없이 대손 처리하였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손금 부인, 법인세 등 00억원 추정

●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가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장기간 연체되었다는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Q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법정 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④ 근로사실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 중점 검증항목

○ 인건비 중 실제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세무조사 시 가공인건비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정유형

- ①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친인척 등) 인건비 계상
- ② 허위 직원(명의만 있는 직원) 인건비 계상
- ③ 퇴직자 인건비 계속 계상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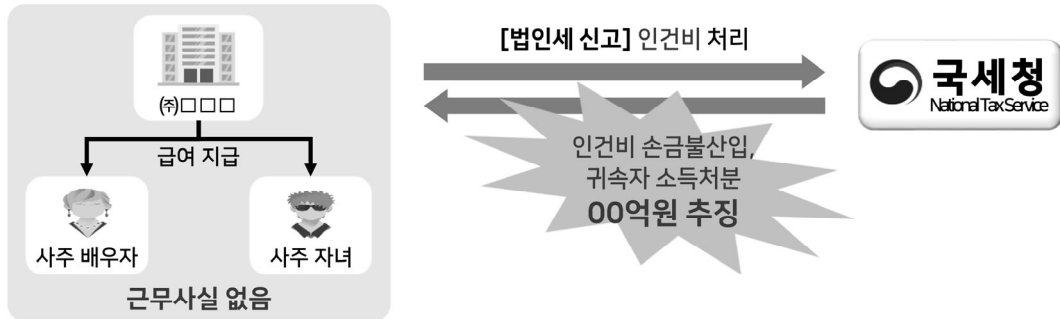
- (유의사항)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등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처분 될 수 있으므로 근무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근무사실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인사발령 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현장 근무 사진 등),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친인척 등) 근무자의 경우 업무필요성 및 근무실태 입증 자료 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등

● 주요 사례

근로 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 가공인건비 계상



● 조사 결과

출퇴근 기록·결재서류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사주 일가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세 등 00억원 추정

● 자주 묻는 질문

Q1.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나요?

대표자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고 업무 내용과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나요?

동일 직급·유사 직무 종사자의 통상적인 인건비를 비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 형태, 근무 시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3.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를 하였더라도 가공인건비가 될 수 있나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근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⑤ 연구·인력개발비 부담 세액공제

● 중점 검증항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담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정유형

- ① 단순 업무(단순 품질검사, 단순 개량 등) 수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② 타 업무(일반행정 업무 등) 겸직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③ 연구개발 외 타 목적 해외출장이 확인되는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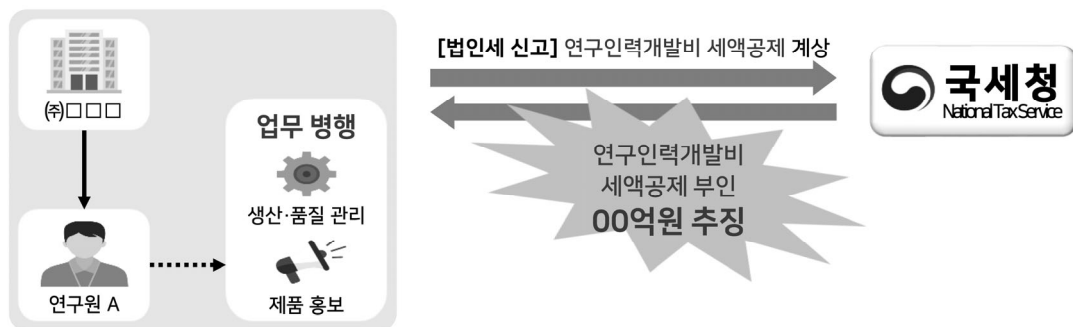
- (유의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해 적용되며, 품질관리 등 단순 업무 활동 연구원 및 타업무 겸직 연구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연구 수행 입증 자료(연구 계획서, 연구 노트 등), 연구 성과 자료(시제품사진, 특허·출원자료등), 기타 관련 자료(보고서, 이메일등) 등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주요 사례

타 업무 겸직 연구원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상



● 조사 결과

연구일지, 업무 분장표, 내부 결재 문서, 출장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개발 외 타 업무 병행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00억원 추정

● 자주 묻는 질문

Q1. 연구원이 연구 업무와 영업/행정 업무를 병행하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연구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합니다. 타 업무(홍보, 영업, 행정 등)를 겸직하는 경우 그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겸직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연구원의 인건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정부에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정부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를 보전받는 경우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누락

● 중점 검증항목

○ 법인사업자의 자금을 대표자·임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아 세무조사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추정유형

- ① 대표자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자 미지급
-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무이자(저율) 적용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 (유의사항) 가지급금이란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되었으나 급여 등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저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법정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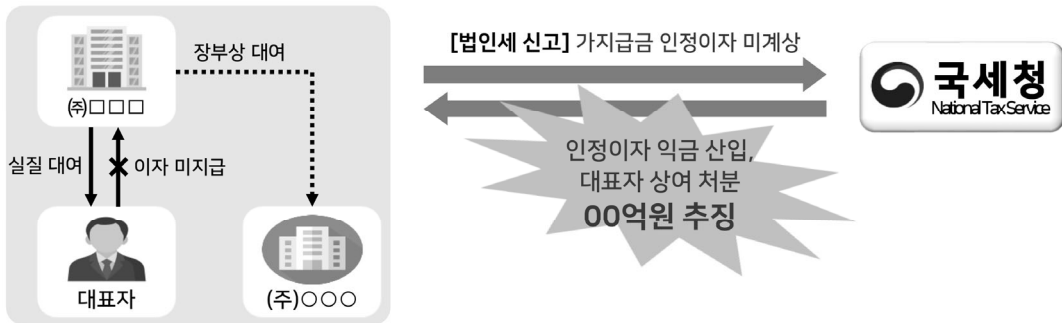
- (준비서류) 가지급금 발생 내역 및 원인별 명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상환계획서, 이자 계산서 및 이자 수취내역, 기타 자금의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부 결재 문서 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동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 주요 사례

대표자 대여금을 법인 대여금으로 변칙 처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계상



● 조사 결과

(주)□□□가 (주)○○○에 법인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 00억원 추정

●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과세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 정상적인 이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Q2.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고시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정상적인 이자를 실제로 수취한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⑦ 자산화 대상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 중점 검증항목

세법상 '자산'임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징유형

- ①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을 수선비로 처리
- ② IT시스템·ERP 구축 비용을 지급 수수료로 처리
- ③ 기타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성능 증대) 금액을 비용 처리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유의사항) 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한도 초과 부분은 손금불산입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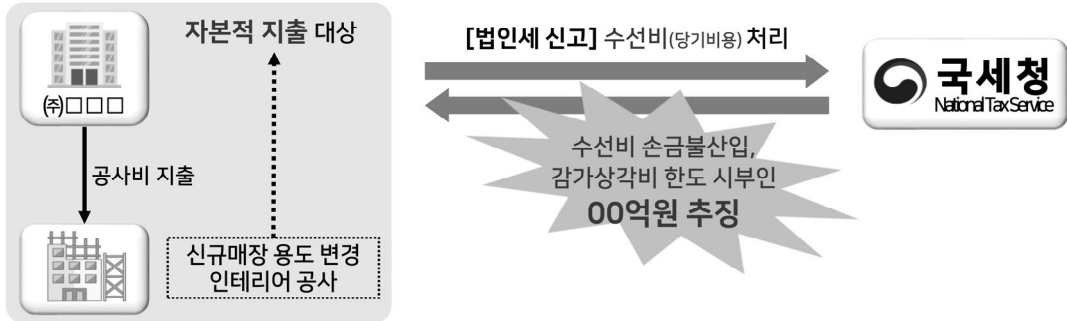
- (준비서류) 공사 용역 계약서·견적서 등, 지출 성격 판단 자료(내부검토자료, 지출 전·후 비교 사진 등), 기타 관련 자료(과제설명자료등)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주요 사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당기 손금 처리



● 조사 결과

신규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수선비 처리한 공사비를 자산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해 당기 비용처리 부인, 법인세 00억원 추정

● 자주 묻는 질문

Q1.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출한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 그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2.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등 설치, 건물의 증축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은 자산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소액인 경우에도 자산화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취득가액에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사업연도에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개별 자산별로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더라도 자산화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⑧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 중점 검증항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미수취 포함)하여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징유형

- ①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수수
- ② 공급가액·거래시기·거래상대방 등이 허위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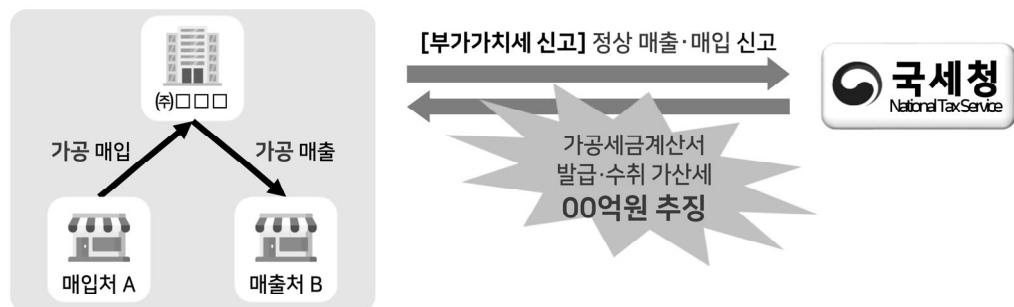
-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있으므로 반드시 거래실질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실제 거래 입증자료(계약서, 대금지급증빙, 거래물품·용역관련 사진, 운송장, 입·출고기록, 작업일지등)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동법 제60조【가산세】

● 주요 사례

매출 부풀리기 목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 조사 결과

사용가치 없는 자산을 고가의 새 장비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물건을 사오면서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람에게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공급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납부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Q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4%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늦게 함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⑨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 중점 검증항목

법인(개인)사업자가 과·면세 매출 구분을 잘못하여 세무조사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정유형

- ①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거나 일부 면세거래를 전체 매출로 확대 적용
- ②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오류
- ③ 면세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 ④ 부수재화·용역의 과·면세 오인(주된 거래가 과세임에도 부수 거래를 면세 처리 등)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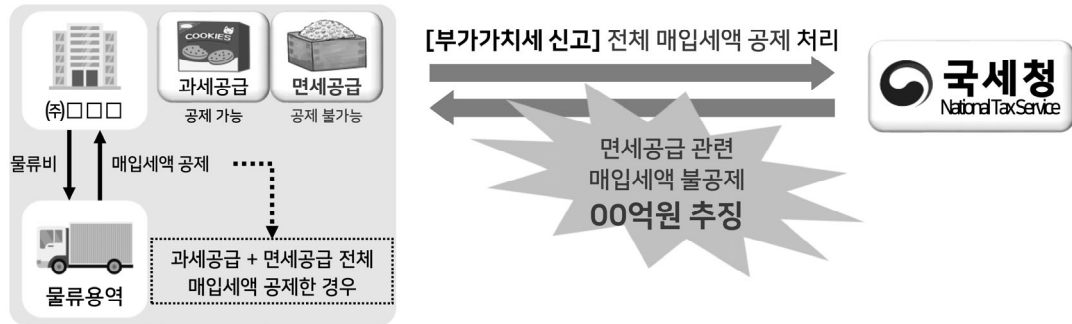
- (유의사항)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는 공급내용의 실질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업종 특성상 과세·면세가 혼재된 경우 거래별·항목별 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계약서·전적서 등, 과·면세 매출 안분 계산 자료,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유권해석 자료 등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동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동법 제14조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동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주요 사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제공받은 물류용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조사 결과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제공받은 물류용역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면세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분에 해당하는 00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

● 자주 묻는 질문

Q1.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어느 사업에 직접 귀속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공과금·관리비·공용비품 구입비 관련 매입세액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식	$\begin{aligned} & \text{(과세분) 공통매입세액} \times \left(\frac{\text{해당 과세사업 공급가액}}{\text{총공급가액}} \right) \\ & \text{(면세분) 공통매입세액} \times \left(\frac{\text{해당 면세사업 공급가액}}{\text{총공급가액}} \right) \end{aligned}$
-----	--

다만, 과세나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점 검증항목 안내 ⑩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 중점 검증항목

실제 판매는 없지만, 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징유형

- ① 사업용 재화(차량, 전자기기 등) 및 부동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
- ② 거래처·임직원·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재화 무상(저가) 제공
- ③ 자가건설·자가제조 재화의 사적 사용

●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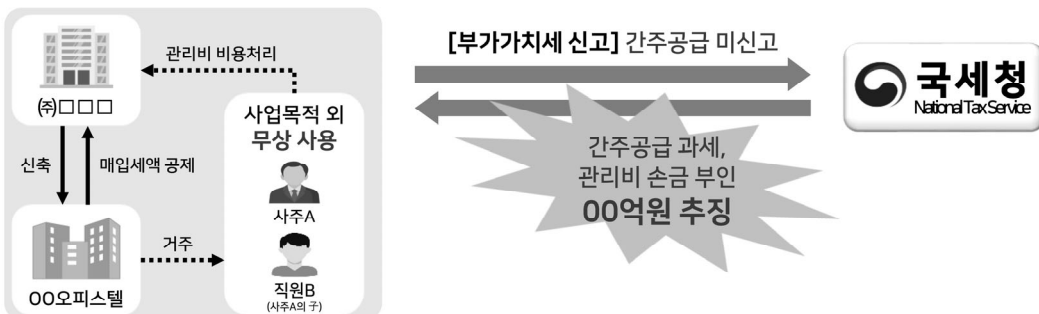
- (유의사항)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비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실제 판매는 없지만 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자산·재고 사용 내역 자료(관리대장, 출고 내역서 등), 제공목적 및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집행 내역, 내부 결재 문서 등) 등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동법 제29조 【과세표준】, 동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주요 사례

매입세액 공제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



● 조사 결과

탐문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사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한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00억 원 추정

● 자주 묻는 질문

Q1.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간주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형평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Q2. 광고용 샘플이나 사은품도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샘플·사은품 등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Q3. 취급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도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나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이 발생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 국세청, 2026. 4

-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10.31.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접수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 |

- ◆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 ◆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물취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 ◆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 ◆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제보한 사례

-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붙임2]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 (최대 40억원 한도) |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국민들이 제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거 부동산 탈세와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사례】

사례 1) 허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0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0천만 원 지급

사례 2)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0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0억 원 지급

사례 3) 주택 취득자금을 몰래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0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0천만 원 지급



-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 1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주요내용

□ 탈세제보 대상

- 부동산 거래 과정(취득, 보유,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

|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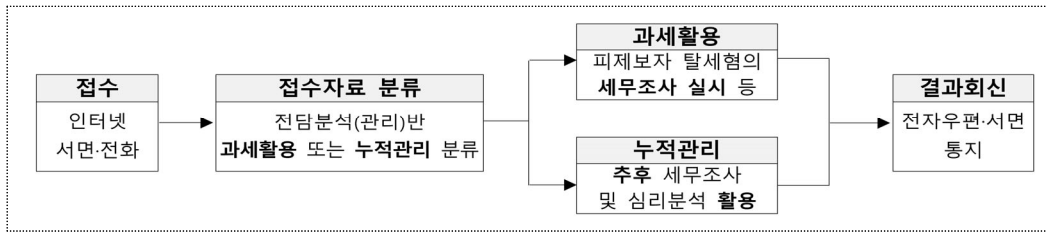
- ①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 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
- ③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
- 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
- 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 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

□ 탈세제보 방법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

구 분	접수 방법
· 인터넷	▶ 홈택스-상담·탈세·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전화(ARS)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④)
· 서면	▶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 탈세제보 처리절차



□ 탈세제보 포상금

-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 중요한 자료 >

-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 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중요자료 판단기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

- ①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②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③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정

구분	중요자료 해당하는 경우	중요자료가 아닌 경우
내부문서	조세 탈루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 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소재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등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인의 실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계좌번호를 제출하고 타 임차인들의 임차료 추정액을 작성 제출한 경우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경우
공문서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10일 (금)	4월 13일 (월)	4월 14일 (화)	4월 15일 (수)	4월 16일 (목)
미 달 러 (USD)	1481.10	1479.80	1489.80	1481.40	1473.10
일 본 엔 (JPY)	931.19	925.83	935.10	932.55	927.62
영 국 파 운 드 (GBP)	1988.97	1981.38	2013.32	2010.11	1999.00
캐 나 다 달 러 (CAD)	1071.82	1066.52	1080.54	1076.09	1072.55
홍 콩 달 러 (HKD)	189.06	188.96	190.24	189.11	188.05
위 안 화 (CNH)	216.67	216.59	218.00	217.55	216.06
유 로 화 (EUR)	1732.22	1727.00	1752.68	1747.46	1738.92
호 주 달 러 (AUD)	1048.62	1038.67	1058.06	1056.09	1056.51
싱 가 폴 달 러 (SGD)	1163.56	1157.72	1171.04	1165.26	1159.2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71.86	373.22	374.79	374.94	372.47